



County of San Diego

NICK MACCHIONE, FACHE
국장

보건복지국(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WILMA J. WOOTEN, M.D.
공중보건 책임자

공중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S)

3851 ROSECRANS STREET, MAIL STOP P-578

SAN DIEGO, CA 92110-3134

(619) 531-5800 • FAX (619) 542-4186

보건책임자 명령서 (COVID-19에 노출된 사람의 자가격리)

모든 사람이 COVID-19에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연령이나 기저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현재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지역 보건 비상사태 및 지방 비상사태 선포 대상 지역이며,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COVID-19의 확산을 늦추고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보건 담당관(보건책임자)이 COVID-19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접촉자, 가까운 파트너, 돌봄이 및 COVID-19 진단을 받았거나 COVID-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COVID-19 환자)과 밀접 접촉한 기타 모든 사람은 특정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밀접 접촉"은 COVID-19 환자의 증상이 시작되기 48시간 전(또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COVID-19 환자가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COVID-19 환자와의 접촉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24시간 기간 동안 누적으로 총 15분 이상 동안 COVID-19 환자로부터 6피트 이내의 거리에 있었던 경우, 또는
2. 보호되지 않은 방식으로 COVID-19 환자의 체액 또는 분비물과의 접촉이 있었던 경우(기침, 재채기, 식기 공유 또는 동일한 용기에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 등).

본 명령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적용되는 자가격리 기간과 조치를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예방 접종 상태, 건강 상태, COVID-19 증상, 직장 환경 또는 학교 환경과 같은 요인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및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명령에는 상세 자가격리 기준 및 조치가 있는 아래 하이퍼링크가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문서가 업데이트되면 해당 업데이트 내용은 자동으로 이 명령의 일부가 됩니다.

이 명령은 고용주, 학교, 시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CDPH) 또는 인허가 기관이 더 엄격한 격리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따라서 보건책임자는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섹션 101040, 101030, 120175, 120215, 120220 및 1202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1. 위에 설명된 모든 "밀접 접촉자"는 아래에 명시된 해당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 a) 밀접 접촉자인 **일반 대중**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의 최근 **일반 대중의 격리 및 자가격리에 관한 지역 보건 관할지침**에 명시된 모든 해당 자가격리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현행 버전은 여기에 제공되어 있으며 나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on-Isolation-and-Quarantine-for-COVID-19-Contact-Tracing.aspx>
 - b) 해당 **보건의료 인력**은 **SARS-CoV-2에 노출된 보건의료 인력(HCP)에 대한 자가격리와 격리 및 COVID-19 감염 의료인력의 업무 복귀에 관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의 최근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그 현행 버전은 여기에서 제공되어 있으며 나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HCQ/LCP/Pages/AFL-21-08.aspx>.
 - c) **학교**는 2021-22 학년도에 캘리포니아의 K-12 학교에 대한 최근 COVID-19 공중 보건 지침에 명시된 자가격리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현행 버전은 여기에 제공되어 있으며, 나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K-12-Guidance-2021-22-School-Year.aspx>.
2. 심각한 인력 부족 기간에는 CDPH 규정 또는 해당 주 인허가 기관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고용주가 인력 또는 시설에 대한 대체 자가격리/근무 배제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긴급 임시 기준의 업무복귀 요건에서 Cal/OSHA 규정 면제).
3. 자가격리를 끝내기 위한 COVID-19 음성 검사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핵산 증폭(NAAT) 검사(예: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PCR검사, LAMP[loop mediated amplification] 검사) 또는 항원 검사 등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인가 COVID-19 바이러스 진단 검사 방식이 직장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충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자가격리 기간, 취해야 할 조치 및 예외에 대한 추가 갱신 내용은 이 명령 날짜 이후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 내용은 다음 카운티 웹페이지의 "자가격리 명령" 섹션 옆에 게시됩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health-order.html. 이 웹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업데이트 내용은 자동으로 이 명령의 일부가 되며 위의 섹션에 포함된 불일치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이 명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 웹페이지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보건책임자 자가격리 명령서

2022년 2월 8일

페이지 3

COVID-19 환자에 노출되어 자택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은 *COVID-19 밀접 접촉자 자택 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지침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20Home%20Quarantine%20Guidance.pdf>

이 명령 또는 이 명령에 포함되는 자가격리 규정에서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거리 두기 대상자에서 치료 전문가, 이 명령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 보건책임자의 대리인, 보건책임자가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기타 사람 또는 돌봄이는 제외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COVID-19의 전형적인 징후 및 증상에는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발열 또는 오한, 근육통 또는 신체 통증, 두통, 인후통,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또는 설사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침에 따라 COVID-19 때문에 격리되고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보건 책임자의 격리 명령은 다음의 카운티 웹 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health-order.html.

이 명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구금, 벌금형 또는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섹션 120275 및 120295). 이 명령은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 내의 모든 법집행 담당관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법 섹션 26602 및 41601,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섹션 101029에 근거).

위와 같이 명령을 공표합니다.

일자: 2022년 2월 10일

Wilma J. Wooten, M.D., M.P.H.

공중보건 책임자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건복지국(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공중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s)